#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217

제안년월일 : 2021년 03월 05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당직과 비상근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함.

#### 2. 주요내용

○ 안 제7조 제4항 후단 규정 중 "그 밖의 방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"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급기준 등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7조제4항).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"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"를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"로 한다.

# <u>수정안 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	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	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	4	4
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		
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		
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<u>지</u>	, <u>⊐</u>	, <u>A</u>
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	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	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
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	관하여	<u>무에 관하여</u>
한다.	<u>.</u>	

##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"를 "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"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"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"를 "근무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"을 "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"로, "1주일"을 "6주일"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전단 중 "아니할"을 "않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없다"를 "없으며,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·저축한다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"않는다"를 "않되,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"로 한다.

제23조제2호 중 "국회·법원·검찰"을 "국회·법원·검찰·경찰"로 한다.

제24조제9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5일"을 "10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6항(종전의 제15항)을 삭제한다.

- ⑨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③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 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"어린 이집등"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  - 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  - 3. 미성년자이거나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

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
4.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④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 본문 중 "토요일, 공휴일"을 "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, 공휴일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토요일등"을 "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생	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	4
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	
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<b>지급기준 등 지</b>	<u>지급기준 등 당직과</u>
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	비상근무에 관하여
다.	
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	제15조(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<u>토요</u>	②
<u>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</u> 를 한 공무원에	근무
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	
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사정이나 그 밖	
의 부득이한 사유로 <b>근무를 한 토요일</b>	제1항에 따라
<u>또는 공휴일</u> 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	근무한 날
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	
소된 날부터 <u>1주일</u> 이내의 다른 정상근	<u>6주일</u>
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연가계획과 허가) ① ~ ③ (생	제20조(연가계획과 허가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	4
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	

현 행	개 정 안
활용하지 <u>아니할</u>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	<u>않은</u>
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	
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	
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<u>없다</u> .	없으며, 연
	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
	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
	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·저축한
	<u>다</u> .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연가일수 공제) ① 결근 일수, 정직	제21조(연가일수 공제) ①
일수,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	
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	
(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	
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에서 공제	
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	
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	
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	
하지 <u>않는다</u> .	않되,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
	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
	<u>가 일수에 더한다</u> 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	제23조(공가)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	

현 행	개 정 안
가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무와 관련하여 <u><b>국회·법원·검찰</b></u> 그	2 <u>국회·법원·검찰·</u>
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	<u> 경찰</u>
3. ~ 11. (생 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 략)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<del>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</del>	⑨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
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	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
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	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
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	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
<u>다.</u>	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
	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
	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
	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
	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
	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
	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
	<u>다.</u>
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	①
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<u>5일</u> 이내의	<u>10일</u>
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	
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	
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	
따로 정한다.	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ı	I

- ③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 다.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 유아교육법\_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 등교육법,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 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- 2.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「민법」 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 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건강검 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 우

- ③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 - 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・ 중등교육법,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"어린이집등"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 야 하는 경우
- 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에 참여하는 경우

3. 미성년자이거나「장애인복지법」제2 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 조에 서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 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 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</u> 설>	다)에 동행하는 경우 4.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④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
① (생 략) ①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 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 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	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한 조각 제〉)
① (생 략) [별표 5]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(제24조의2 관련)	① (현행과 같음) [별표 5]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현행	개 정 안
1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	1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
가. 소속기관의 장은 <u><b>토요일, 공휴일</b></u> 또	가 <u>근무시간 외의</u>
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(이하 "토요	근무를 하거나 토요일, 공휴일
일등"이라 한다)에 근무를 한 시간선	
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	
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	
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	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	
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	
수 있다.	<u>.</u>
나. <u>토요일등</u> 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	나.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
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	<u> 토요일등</u>
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	
다.	·